

1. 제출처

- a. 캘리포니아 거주자: 이름 변경 신청서는 이름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b.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이름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정정된 캘리포니아 혼인허가서 및 증명서, 이름을 변경하려는 사람의 정정된 캘리포니아 출생증명서, 또는 이름을 변경하려는 사람의 미성년 또는 성년 자녀의 정정된 캘리포니아 출생증명서 발급 명령도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름 변경 신청서는 해당 혼인이 이루어진 카운티 또는 출생증명서가 발급된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름 변경 대상

본 신청은 자신의 이름 변경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예: 만 18세 미만 자녀)의 이름을 변경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특정 이름의 비공개 처리

이름 변경 신청 시 현재 이름과 변경하려는 이름을 주무장관의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인 세이프 앤 홈의 일환으로 비공개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민사소송법 § 1277(b)), 세이프 앤 홈 프로그램의 정식 참여자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법원에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세이프 앤 홈)에 따른 이름 변경 절차 정보 시트(양식 NC-400-INFO)를 참조하십시오.

4. 필요한 양식

성 정체성과 관련 없는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 각각에 대해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준비하십시오.

- a. 이름 변경 신청서(양식 NC-100)
- b. 이름을 변경하려는 사람의 이름 및 정보(양식 NC-110) (필요한 만큼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 c. 사유소명명령—이름 변경(양식 NC-120)
- d. 이름 변경 판결문(양식 NC-130, 또는 후견인의 경우, 양식 NC-130G)
- e. 민사사건 표지(양식 CM-010)

또한 후견인은 이름이 변경될 각 아동에 대하여 이름 변경 신청서 첨부서류(후견인 진술서)(양식 NC-110G)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지역 법원마다 추가 서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양식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 정체성에 부합하기 위한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 정체성에 부합하기 위한 이름 변경 신청 안내문(양식 NC-200-INFO)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변경과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의 변경 인정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읽으십시오.

- 본인을 위하여 직접 신청하는 성인의 경우, 성인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이름 변경 및 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안내문(양식 NC-300-INFO).
-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신청 안내문(양식 NC-500-INFO).

5. 접수 및 접수 수수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에 기재된 양식들의 원본(사본 제외)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고, 접수 표시가 된 신청서(양식 NC-100) 사본 2부를 받아 두십시오.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원 비용 면제 신청(양식 FW-001) 및 상급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에 관한 정보 시트(양식 FW-001-INFO)를 참조하십시오.) 주(State)의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세이프 앤 홈)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에게는 접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법원 심리기일 요청 및 사유소명명령 받기

사유소명명령-이름 변경(양식 NC-120)을 제출할 때, 법원에 심리기일을 요청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은 양식 제출일로부터 최소 6주 이후가 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작성한 양식을 서기 사무실로 가져가십시오. 서기가 심리기일과 장소를 안내하고, 사법관의 서명을 받고,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을 귀하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7. 사유소명명령의 공고

대부분의 경우, 심리일 이전 최소 4주 연속으로 주 1회씩 지역 일반 일간지에 사유소명명령-이름 변경 사본을 게재해야 합니다. 신문은 법적으로 명령 및 공고를 게재할 자격이 있는 신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신문사는 심리 전에 공고 게재 증명서를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내에 일반 배포 신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서기가 사유소명명령을 게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귀하가 주(State) 증인 보호 프로그램 참여자인 경우.
- 귀하가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 참여자이며, 신청서에서 (a) 가정폭력, (b) 스토킹, (c) 성폭력, 또는 (d) 인신매매를 피하기 위한 신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 이름 변경 대상이 소년법원 관할에 있는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피보호자인 경우.

8. 아동의 이름 변경

- 귀하가 만 18세 미만 자녀의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부모이고, 생존해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이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청한 부모는 동의하지 않는 부모에게 '사유소명명령' 사본 또는 심리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은 심리일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달은 직접 송달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다른 주(state)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 413.10, 414.10, 415.10 또는 415.40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 이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부모에게 명령서 또는 통지를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신청인인 귀하는 이 문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습니다.
- 이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에게 명령서 또는 통지서 사본을 우편요금을 선납한 수령증명서 반환식 특급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며 해당 미성년자의 이름 변경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 심리 최소 30일 전에 해당 아동의 생존한 부모에게 직접 송달 방식으로 심리 통지를 제공하거나, (2)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조부모가 있다면 심리 최소 30일 전에 해당 아동의 조부모에게 심리 통지를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은 직접 송달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다른 주(state)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 413.10, 414.10, 415.10 또는 415.40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송달한 경우, 작성을 완료한 '사유소명명령 송달 증명서'(양식 NC-121) 사본을 심리 전에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해당 아동에게 법적 부모가 두 명 이상 있는 경우, 양식 MC-025를 신청서에 첨부한 뒤 관련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9. 구금·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사람의 이름 변경

귀하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거나,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의 관할 하에 있는 경우(주립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경우)에는 이름 변경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서를 관련 정부기관에 송달해야 합니다.

-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카운티 보안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립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교도소장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석방 상태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지역 가석방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해당 관리자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관, 교도소장 또는 지역 가석방 관리자에게 사본을 제출한 후에는, 작성을 완료한 우편 송달 증명서(양식 POS-030)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양식 NC-110에서 신청인이 구치소 수감 중인지 또는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의 관할하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신청서 송달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법원 심리

예정된 심리 최소 2일 전까지 서면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심리 없이 신청을 인용하고 판결문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열릴 것인지 알아보려면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심리가 있는 경우 모든 문서의 사본을 심리에 가져오십시오. 사법관이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사법관이 판결문 원본에 서명합니다.

11. 장애 관련 편의 제공 요청

귀하가 장애가 있고 법원 심리 참여를 위해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양식 MC-410)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방법(양식 MC-410-INFO)을 참조하십시오.

12. 출생증명서 정정발급

귀하가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하였고 이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출생증명서로 정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Vital Records - MS 5103
P O. Box 997410
Sacramento, CA 95899-7410

전화: 916-445-2684
웹사이트: www.cdph.ca.gov

지역 법원마다 본 안내사항을 보완하는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이름 변경 신청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시간, 그리고 사유소명명령 공고에 사용할 수 있는 신문 목록 등에 관한 추가 서면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